
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최기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70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30.

발 의 자 : 최기상 · 조인철 · 윤준병
남인순 · 맹성규 · 김남근
윤후덕 · 허 영 · 정태호
이강일 · 박해철 · 이주희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기업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해 재정경제부 민간보조사업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물가감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특히 물가감시센터는 생필품, 가공식품, 개인서비스, 공공서비스 등 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가격 조사 및 원가분석을 시행해 발표하고 있으나, 행정적·재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조사 범위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일부 지역의 유통업체에만 국한되는 실정임.

이에 물가감시센터의 지정·운영 및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

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물가감시센터가 공적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, 나아가 소비자의 알 권리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2 신설).

주요내용

가. 물가감시센터의 지정(안 제3조의2제1항 신설)

재정경제부장관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상 감시 등을 위하여 가격조사 및 원가분석을 통한 제품의 가격과 그 합리성에 대한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물가감시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.

나. 재정경제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의2제2항 신설).

다. 물가감시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도록 함(안 제3조의2제3항 신설).
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조의2(물가감시센터의 지정)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한 감시 등을 위하여 가격조사 및 원가분석을 통한 제품의 가격과 그 합리성에 대한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물가감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가감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물가감시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2(물가감시센터의 지정)</u>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한 감시 등을 위하여 가격조사 및 원가분석을 통한 제품의 가격과 그 합리성에 대한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물가감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가감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른 물가감시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